

참고

장애인 자립특화형 주택 여기家 입주자 모집 관련 Q&A

1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아래표 참고)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장애인가구에 장애인만 입주할 경우에는 장애인인 본인이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며, 장애인가구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입주할 시에는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이전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분양권 등 포함)

3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4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 임대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6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경합 시 가점 부여의 기준이 되므로, 미제출 시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가점 인정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여, 착오나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예비입주자(당첨자+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약 3배수로 모집합니다. 이 중 당첨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8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입주대상자 해당 세대의 소득, 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9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세무서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 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10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나요?

-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자산 검증이 불필요합니다.

11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입증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 차상위계층은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대상자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 입증서류 : 차상위계층 자격 입증서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가점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 본인이 신청한 모집유형에 해당되는 가점과 공통가점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나(공통가점 최대 20점, 신청유형별 가점 최대 20점), 본인의 모집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점은 적용 불가합니다.